

서울고등법원 2018. 5. 11 선고 2017나2031539 판결 [보증금지급청구의 소]

---

###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18. 5. 11 선고 2017나2031539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5. 24 선고 2015가합37696 판결

### 전 문

원고, 피항소인주식회사 코리아일레콤

피고, 항소인사단법인 한국방위산업진흥회

피고보조참가인주식회사 경안전선

변론 종결2018. 4. 4.

판결 선고2018. 5. 11.

제1심판결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5. 24. 선고 2015가합37696 판결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N

##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722,022,261원 및 그 중 4,114,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4. 17.부터 2015. 11. 17.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2,110,540,025원에 대하여는 2012. 2. 29.부터 2015. 4. 16.까지 연 3.88%, 그 다음날부터 2015. 11. 17.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8,497,482,236원에 대하여는 2013. 1. 29.부터 2015. 4. 16.까지 연 3.88%, 그 다음날부터 2015. 11. 17.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이 유

###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11면 제5행 "증거가 없다"와 "따라서" 사이에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상위 계약에 해당하는 엘지씨엔에스와 쌍용정보통신, 쌍용정보통신과 원고 사이의 납품기한이 연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들 사이의 계약기간 연장합의에 따른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을 제52, 5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계약기간 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이 납품기한이 자동적으로 연장된다고 할 수 없다."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 제11면 제19행 이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원고와 참가인이 기명날인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일반조건 제3조 제1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 6, 12조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을 제54, 5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위 하도급계약 일반조건이 특정한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것을 넘어서 다수 당사자 간의 집단적, 계속적, 반복적인 거래를 규율 대상으로 하고 있는 약관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설령 위 일반조건이 약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계약연장을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하도록 한 규정이 일방 당사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하도급계약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양 당사자가 작성한 서면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계약변경 방식이 부당하게 엄격한 제한을 두는 조항에 해당한다거나 원고에게 위와 같은 방식을 설명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제1심 판결 제14면 제17행 이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연차별 계약으로 나뉘어 체결되었고 2011, 2012년의 연차별 계약은 이미 완료되어 원고에게 손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기성대가가 환급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연차별 계약으로 구성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하도급계약은 참가인이 최종 납품일까지 납품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해제될 경우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연차별 계약으로 나누어 체결되었는지,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미 지급된 기성대가 전액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원고가 이러한 기성대가 전액의 반환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참가인으로 하여금 기성대가 지급보증서를 원고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특수조건 제44조의 4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서 기성대가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하는 피고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 판결 제15면 제5행 이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참가인의 채무불이행시 원고는 당초 보험가입금액에서 상기 연차별 이행완료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제외한 잔여 계약보증금 범위 내에서 보험금을 청구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장기계속계약 연차별계약 이행완료 확인서(을 제9호증의 3)를 작성해 주었으므로 이에 따라 계약보증금이 감액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확인서는 피보험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국가계약법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는 경우에 한하여 효력이 있는데 원고가 이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없는 점, 위 확인서에 "피고의 이행(계약)보증보험계약 내용변경용"이라고 용도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에 따라 피고가 보증금액을 변경하는 조치를 취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이후 피고가 참가인에게 발급한 계약보증 배서상의 보증금액(을 제15호증의 2)도 당초의 보증금액과 동일한 금액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 판결 제15면 제17행 "볼 수 없다"와 "따라서"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갑 제50 내지 53, 56, 5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 해제 이후 쌍용정보통신에 담보로 제공하였던 주식 및 특허권을 회수하고 피담보채무 2,874,166,968원을 면제받음으로써 위 연구개발 산출물에 대한 정산도 마쳤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2011, 2012년도 산출물에 대한 권리는 발생 즉시 방위사업청에 귀속되므로 참가인이 위 산출물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참가인이 체계개발간 획득된 모든 기술, 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산출되는 노하우 및 제반 자료에 관한 권리,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및 동 저작권과 관련된 권리, 본 계약에 의하여 획득, 발생된 기술 및 소프트웨어 등 일체의 산출물의 지적 소유권 및 사용권>은 방위사업청에 귀속된다고 정하고 있으나(특수조건 24, 27조), 위 규정에서 산출물에 대한 권리의 귀속 시기를 적시하고 있지 않은 점, 방위사업청이 2017년경 각 하도급업체들과 산출물의 권리양도, 귀속에 대한 절차를 별도로 취한 점(갑 제68호증) 등에 비추어 볼 때 산출물에 관한 권리가 발생 즉시 방위사업청에 자동으로 귀속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조용현**

**판사정석중**

판사조진구